- 2021회계년도 실적기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목 차 |||

| I.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 3 |
|---|
| 1. 성과분석 개요5 |
| 2. 자치단체 총괄 성과분석 보고서 7 |
| |
| Ⅱ.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13 |
|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15 |
| 2. 신청사건립기금 23 |
| 3. 자활기금 31 |
| 4. 식품진흥기금 41 |
| 5. 옥외광고발전기금 51 |
| 6. 재난관리기금 59 |
| 붙임: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12월중 지자체 통보 예정 |

I.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1. 성과분석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21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나. 5번·6번 평가항목은 1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포함

□ 분석절차 및 일정

| 개별기금의 운용부서에서 | 지자체(6~7월) | |
|---------------------|-----------------------|-------------------|
| | • | |
| 자치단체별 자체 성과는 | 기초→광역 →행정안전부(7월) | |
| | | |
|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 및 종합 | 행정안전부 (8~9월) | |
| A | | |
| 우수단체 표창 | 미흡단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 (10~12월) |

□ 분석방향

- (기금효율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유도
- (건전성 제고)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기금 수입의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결과활용

-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2. 자치단체 총괄 성과분석 보고서

1 총 평

- 대구 남구는 2021회계년도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4개의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기금은 총 1개 기금(신청사건립기금)이다.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3개에 비해 적정한 기금 수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기금조성을 예방 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적정성 평균 93점으로 건전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부분에서는 2020회계년도 대비 사업비 편성률 5.93%, 사업비 집행률 21.93% 상승하였다.
 - ※ 사업비 편성비율 24.49%, 사업비 집행률 83.98%,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평균 93점, 기금조성액 비율 4.52%

○ 잘된 점

- 자활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92.68%로 작년 대비 26% 증가하였음. 특히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보증금 지원사업' 결과 7개소, 1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 대비 지원대상과 사업비 집행액 모두 증가하였음. 또한 '시설보강 사업비' 5천만원을 집행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분석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액 비중이 92.59%로 상당히 높은 편임. 2021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결과, 사업비 집행률 역시 92%로 높게 나타나 효율적인 기금 운용 사례로 분석됨.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 다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주 수입원인 과징금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역시수입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국한되어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현재의 수입원 외 보조금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4.52%로, 202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필요성이 요구됨.

② 지표별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남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 | 기금 운용 | 효율성 분야 |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 | | |
|-------------|--------------------|-------------------|----------------------------|--------------------------|--------------------|-------------|
| 자치 단체 | 사업비 편성비율 (%) | 사업비 집행률 (%)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 기금조성액 비율 (%) | 기금 수 (개) |
| 대구광역시 남구 | 24.49 | 83.98 | 95 | 제외대상 | 4.52 | 1 |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2020회계년도 대비 사업비 편성률이 5.93% 높아졌고, 동종 자치 단체 평균인 15.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단위: 백만원, %)

| 자치단체 | 기금 | 사업비 편성액 (A) | 계획상 지출액 (B) | 사업비 편성률 (A/B×100) |
|----------|-----------|----------------|----------------|-----------------------------|
| | (평균) | 337 | 1,376 | 24.49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신청사건립기금 | _ | _ | 제외대상 |
| 대구광역시 남구 | 자활기금 | 205 | 1,051 | 19.51 |
| | 식품진흥기금 | 107 | 298 | 35.91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25 | 27 | 92.59 |
| | 재난관리기금 | _ | _ | 제외대상 |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83.98%로 2020회계년도에 비해 21.93% 높아졌고, 동종단체 평균인 63.1%보다 높은 수준임.

(단위: 백만원, %)

| 자치단체 | 기금 | 사업비 지출액 (A) | 사업비 편성액 (B) | 사업비 집행률 (A/B×100) |
|----------|-----------|----------------|----------------|-----------------------------|
| | (평균) | 283 | 337 | 83.98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신청사건립기금 | _ | _ | 제외대상 |
| 대구광역시 남구 | 자활기금 | 190 | 205 | 92.68 |
| | 식품진흥기금 | 70 | 107 | 65.42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23 | 25 | 92.00 |
| | 재난관리기금 | _ | - | 제외대상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전 기금이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소집회의(서면 포함) 연간 2회 이상 개최, 소집회의 시 평균 참석율 2/3 이상 등의 지표를 충족하여 **적정성 지표 평균 93점**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적정성 100점에 해당함.

| 자치단체 | 기금 | ①번 | ②번 | ③번 | ④번 | 운영 적정성 |
|----------|-----------|----|----|----|----|-----------|
| | (평균) | | | | | 93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N | Υ | Υ | Υ | 90 |
| | 신청사건립기금 | N | Y | Υ | Y | 90 |
| 대구광역시 남구 | 자활기금 | Y | Y | Y | Y | 100 |
| | 식품진흥기금 | N | Y | Y | Y | 90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N | Y | Y | Y | 90 |
| | 재난관리기금 | Υ | Υ | Υ | Υ | 100 |

④ 타회계 의존율

- 전 기금 지표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함.

(단위: 백만원, %)

| 자치단체 | 기금 | 타회계 전입금 (A) | 기금 수입결산 총액(B) | 타회계 의존율 (A/B×100) |
|----------|-----------|-------------|---------------|-----------------------------|
| | (계) | | | 전 기금 제외대상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신청사건립기금 | _ | _ | 제외대상 |
| 대구광역시 남구 | 자활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식품진흥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재난관리기금 | _ | _ | 제외대상 |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은 4.52%로 2020회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 자치 단체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 모든 기금 총액 (B) |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 감채기금 총액 (D)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 (E) |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
|-------------|------------------------------|-----------------------|-------------------------|-------------------|---------------------------|-----------------------------|-----------------------------------|
| 대구광역시 남구 | 565,325 | 103,920 | 2,601 | _ | 75,747 | 25,572 | 4.52 |

⑥ 기금 수 현황

- 현재 남구는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법정의무기금 4개와 통합재 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면 분석대상인 기금 수는 총 1개임. 이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3개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증가를 예방하고 있음.

(단위: 개수)

| 자치 단체 | 모든 기금 수 (A) | 법정의무 기금 수 (B) | 감채 기금 수 (C) |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등* 수 (D) | 폐기물처리시설설 치기금 수 (E) |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
|-------------|-------------------|---------------------|-------------------|---------------------------|--------------------------|-------------------------------|
| 대구광역시 남구 | 6 | 4 | 0 | 1 | 0 | 1 |

⑦ 기타

- 2020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모든 지표가 적정 혹은 이행된 사항으로 전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 평가지표 | 전년도 권고사항 | 해당 기금 | 3년 연속 해당 여부 | 조치계획 |
|---|---|--|----------------|---------|
|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 10% 미만 자치단체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적극 활용 검토 | 19%로 적정 | X | 해당사항 없음 |
|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자치단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62%로 적정 | X | 해당사항 없음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 권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중 | X | 해당사항 없음 |
| 미회수채권비율 | 미회수채권 비율이 50% 이상인 자치단체 관리 필요 | 미회수채권 없음 | X | 해당사항 없음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X | 이행 |
| | | 신청사건립기금 | X | 이행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위원회 연 2회 이상 개최 참석율 2/3 이상 | 자활기금 | X | 이행 |
| 운영 적정성 | | 식품진흥기금 | X | 이행 |
| | 3 12 4/0 113 | 옥외광고발전기금 | Х | 이행 |
| | | 재난관리기금 | X | 이행 |
|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 50% 이상 기금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조치 필요 | 전 기금 제외 대상 | Х | 해당사항 없음 |
|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1.9% 이상 자치단체 개별 기금 과다 조성 여부 검토 (구(광역)-II 평균) | 1%로 적정 | X | 해당사항 없음 |
| 기금 수 현황 | 3개 이상 단체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정비 필요 (구(광역)-11 평균) | 1개로 적정 | X | 해당사항 없음 |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작성대상기금 |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전 기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식품진흥기금) | Х | 해당사항 없음 |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 자치단체 | 기금 | 경상적 경비(A) | 기금 총 지출액(B) | 경상적 경비 비율 |
|----------|-----------|-----------|----------------|--------------|
| | 계 | _ | 637 | _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_ | _ | 제외대상 |
| | 신청사건립기금 | _ | _ | - |
| 대구광역시 남구 | 자활기금 | _ | 190 | - |
| | 식품진흥기금 | _ | 70 | -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_ | 23 | - |
| | 재난관리기금 | _ | 354 | 제외대상 |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TI - 1 CI - 11 | 성인지 :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년) | | |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20년) | | |
|----------------|--------------|--------------------|-----|--------------|--------------------|-----|--|
| 자치단체 | 작성대상 기금 수 | 작성 | 미작성 | 작성대상 기금 수 | 작성 | 미작성 | |
| 대구광역시 남구 | 1 | 1 | | _ | | | |

II.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정) 2020. 10. 30. 조례 제1286호
 - ·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정 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
- 설치근거
 -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 ·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u>'2</u> | .0년말 | <u>'21</u> | <u> </u> | 운용현황 | | <u>'22년도</u> 운 | | 계획 | |
|-----------|-------|------------|----------|--------|--------|----------------|----|-------|----|
| 조 | 도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54 | 4,437 | 21,310 | 0 | 21,310 | 75,747 | 1,995 | 0 | 1,995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12월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액은 **75,747백만원**으로 계정별로는 재정안정화계정 **70,625백만원**, 통합계정 **5,122백만원**임.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내역
 - · 2021. 12. 30. 일반회계 전입금 20,000백만원
 - 통합계정 수입내역
 - · 2021. 10. 1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수금 749백만원
 - · 2021. 12. 3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34백만원
 - · 2021. 12. 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16백만원
- 기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재정 악화 시 타 회계 전출 등을 통해 행정** 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통합계정 운용을 통해 특별회계(주차장사업·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예수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해당없음
 - 기금의 모든 지출계획이 재무활동(예치금)에 해당되어 사업비 편성액 없음

(단위: 백만원, %)

| <u>'20년도</u> | | | | <u>'21년도</u>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해당없음 | | | 해당없음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u>'20년</u>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u>'21년</u>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확보하여, 전액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고 있음. 향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의 집행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
|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 기타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 - 금융기관 예치 - 일반회계 전출 - 예수금 상환 | 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수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치하여 구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는 물론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 분 | 지 적 내 용 | 비고 |
|---------------------------|-------------|---------|----|
| | '19년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u>'20년</u> | 해당없음 | |
| N ¬ N O | <u>'21년</u> | 해당없음 |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 타 | 해당없음 |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u>'22년</u>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재정안정화·통합계정 예치금 운용 | 77,617백만원 |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여유재원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금 운용이 필수적임 |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기타회계 전입금, 예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2019년 전입금 18,000백만원 조성
 - 2020년 전입금 32,000백만원, 예수금 4,195백만원 등 총 **54,437백만원** 조성
 - 2021년 전입금 20,000백만원, 예수금 899백만원 등 총 **75,747백만원** 조성
- 구 여유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기금 조성액 전액 기타회계 전입금이나 예수금,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재정 악화 시 타 회계 전출 등을 통해 구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 <u>'19년</u> | <u> </u> | <u>'20년</u> | | <u>'21년</u> | |
|-----|-----------------|-------------|----------|-------------|-------|-------------|-------|
| | 합 계 | 18,000,000 | /% | 54,436,869 | /% | 75,746,763 | % |
| | 전입금 | 18,000,000 | 100 | 32,000,000 | 58.78 | 20,000,000 | 26.40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 | 18,000,000 | 33.07 | 54,436,861 | 71.87 |
| | 예수금 | | | 4,195,000 | 7.71 | 899,300 | 1.19 |
| | 이자수입 | | | 241,869 | 0.44 | 410,602 | 0.54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18,000,000 | /% | 54,436,869 | /% | 75,746,763 | %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금융기관)예치금 | 18,000,000 | 100 | 54,436,869 | 100 | 75,746,763 | 100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 신청사건립기금

(행정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2019년 기금설치 이후 매년 기금 적립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u>'20년말</u> | <u>'21년도</u> 운용현황 | | | <u>'21년말</u> | <u>'22년도</u> 운용계획 |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5,507 | 20,064 | | 20,064 | 25,571 | 15,000 | | 15,000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남구청사는 1976년 건립하여 청사로 계속 이용되어 오다가 2006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고, 이후 보수·보강을 거쳤음. 그러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확대 및 계속된 노후화의 문제 점 발생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으로 2019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기금을 적립, 2021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55억원을 적립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 <u>'20년도</u> | | <u>'21년도</u> | | | |
|--------------|--------------|--|--------------|------|--|--|
|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해당없음 | | | | 해당없음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u>'20년</u>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u>'21년</u>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산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차적인 적립 계획에 맞게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비고 |
|---|----------------|---------|--|----|
|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 신청사 건립 | 구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차계획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차계획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 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 <u>'19년</u>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u>'20년</u> | 해당없음 | |
| | <u>'21년</u> | 해당없음 |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기 타 |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u>'22년</u>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 |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 |
| 신청사건립추진 | 1,500백만원 | 기금적립을 통한 재원확보가 | 상 |
| | | 반드시 필요 | |
| | |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25,571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차적 계획에 따른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로 안정적 재원확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 구 분 | <u>'19</u> Ł | == | <u>'20</u> 년 | <u> </u> | <u>'21년</u> | <u> </u> |
|-----|-----------------|--------------|-----|--------------|----------|-------------|----------|
| | 합 계 | 500,000 | /% | 5,507,581 | /% | 25,572,126 | /% |
| | 전입금 | 500,000 | 100 | 5,000,000 | 90.78 | 20,000,000 | 78.21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 | 500,000 | 9.10 | 5,507,581 | 21.54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 | 6,535 | 0.11 | 64,545 | 0.25 |
| | 기타수입 | | | 1,046 | 0.01 | | |
| | 합 계 | 500,000 | % | 5,507,581 | /% | 25,572,126 | %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500,000 | 100 | 5,507,581 | 100 | 25,572,126 | 100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3. 자활기금

(생활보장과)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0.12.30. 기초생활보장기금 제정, 2008.12.30 자활기금 명칭개정
- 2008.12.30.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 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2009.01.01부터 기금목표액(구출연금 2억원) 조성을 위해 2013년(5년) 까지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 구 재정자립도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구 출연금 40,000천원 삭감되어 2013년 말 구 출연금 160,000천원 적립함.
- 2014년도 말에는 787,78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말 895,019 천원, 2016년도 말 905,943천원, 2017년도 말 1,020,232천원, 2018년 도 말 1,060,784천원, 2019년도 말 1,063,010천원, 2020년도 말 1,001,199천원이 조성됨. 2021년 수입 92,349천원, 지출 190,000천원 으로 연도 말 903,548천원이 조성되었음.
- * 2022년에는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이 126,416천원(이자수입 9,616천원, 그외수입 6,8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0,000천원), 지출이 255,000천원으로 2022년도 말 774,964천원 조성계획.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u>'20년말</u> | <u>'21년도</u> 운용현황 | | | <u>'21년말</u> | <u>'22년도</u> 운용계획 | |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1,001 | 92 | 190 | △98 | 903 | 126 | 255 | △129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12월말 기준 총 903,548,934원 확보함. GM건설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30,000천원, 자활근로사업단 7개소 점포전세보증금 110,000천원, 자활사업단 2개소 시설보강사업비 50,000천원을 지출하였음.
- 2020년은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보증금으로 5개소, 8천만원을 집 행하였으나, 2021년은 7개소 1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u>지원한 사업단수와 집행액 모두 증가</u>하였음. 또한 2020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시설보강사업비 5천만원을 집행하여 <u>다양한 항목에 자활기금을 지출</u>하였음. 자활기금 <u>집행률이 2020년 67%에서 2021년 93%로 늘어난 것과</u> 다양한 항목의 자활기금을 집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 출연금으로 160,000천원 적립되었고, 사업단 폐업 시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13년까지 조성액만 총 798,755천원이 됨. 이후 2014년에 처음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보증금으로 기금이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매년 자활사업단 수익금, 자활사업단 폐업 시 현금성 자산 정리금 등으로 수입은 계속 적립되어 2021년 말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은 903,548천원이며, 자활사업단 점포전세보증금으로 대여된 금액은 총 270,000천원임.
- 추후 점포전세보증금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자활사업단의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대상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활사업의 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및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u>'20년도</u> | | | <u>'21년도</u>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165 | 110 | 67 | 205 | 190 | 93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u>'20년</u> | - 민간경상사업보조 (6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5백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융자금 지원 (10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집행내역 없음) - 민간융자금 지원 (8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67% |
| <u>'21년</u> | -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5백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융자금 지원 (12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집행내역 없음) - 민간융자금 지원 (11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93%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1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3천만원, 자활사업단 시설보강사업비로 5천만원, 민간융자금(점포전세보증금) 으로는 1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출된 3천만원은 GM건설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로 매월 250만원, 총 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보강사업비는 빨래장이(앞산점) 사업단, 참품사업단에 각 5.5백만원, 44.5백만원 지출함.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

목으로 5백만원을 집행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함. 민간융자금 지원으로는 자활사업단 7개소[참터사업단 1천만원, 빨래장이(앞산점) 사업단 2천만원, 참빛사업단 1천만원, 참품사업단 3천만원, 늘품 사업단 1천만원, 정성푸드사업단 제1작업장 2천만원, 정성푸드사업단 제2작업장 1천만원]에 총 1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음. 자활사업단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자활참여자의 만족감 및 자활에 대한 의지 고취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 -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사업비 -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 자활사업단 ·자활 기업에 대한 전세 점포보증금 대여 | 시설보강사업비 (50,000천원) - GM건설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30,000천원)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사업비,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자활근로자·종사자 교육비 및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대여로 당초계획은 20천5백만원이고, 집행실적은 19천5백만원으로 목적 달성도 93%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u>'19년</u> |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u>'20년</u> | 해당없음 | |
| NAME | <u>'21년</u> | 해당없음 |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없음 | |
| ار | 타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u>'22년</u>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내용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하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자활수익금, 이자수입
 - 2009.01.01.부터 기금목표액(구 출연금 2억원) 조성을 위해 2013년 (5년)까지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 구 재정자립도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구 출연금 40,000천원 삭감되어 2013년말 출연금 160,000천원 적립함. 2014년도 말에는 787,78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말 895,019천원, 2016년도 말 905,943천원, 2017년도 말 1,020,232천원, 2018년도 말 1,060,784천원, 2019년도 말 1,063,010천원, 2020년도 말 1,001,199천원이 조성됨. 2021년 수입 92,349천원, 지출 190,000천원으로 연도 말 903,548천원이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21년까지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기간이 3년까지 허용되었으나 「2022년 자활사업 안내(1)」 지침 변경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기간의 제한이 삭제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단 운영이 기대됨. 이에, 새로운 사업단 발굴에 주력하여 자활기금으로 다양한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지 못한 자활근로사업단 종사자 및 근로자의 교육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시행토록 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종사자 및 근로자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 구 분 | <u>'19년</u> | <u> </u> | <u>'20</u> 년 | <u> </u> | <u>'21</u> 년 | = |
|-----|-----------------|-------------|----------|--------------|----------|--------------|------|
| | 합 계 | 1,202,010 | /% | 1,111,199 | /% | 1,093,549 | %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81,500 | 6.8 | 1,925 | 0.2 | 67,717 | 6.2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1,060,785 | 88.2 | 1,063,010 | 95.7 | 1,001,199 | 91.6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5,499 | 1.3 | 16,522 | 1.4 | 5,710 | 0.5 |
| | 기타수입 | 44,226 | 3.7 | 29,742 | 2.7 | 18,923 | 1.7 |
| | 합 계 | 1,202,010 | % | 1,111,199 | /% | 1,093,549 | % |
| | 비융자성사업비 | 49,000 | 4.1 | 30,000 | 2.7 | 80,000 | 7.3 |
| | 융자성사업비 | 90,000 | 7.5 | 80,000 | 7.2 | 110,000 | 10.1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063,010 | 88.4 | 1,001,199 | 90.1 | 903,549 | 82.6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4.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 연도 등
 - . 제정: 2002. 10. 30. 조례 제583호
 - . 개정: 2006. 4. 10. 조례 제673호
 - .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1267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u>'20년말</u> | <u>'21년도</u> 운용현황 | | | <u>'21년말</u> | <u>'22</u> Ł | <u> 1도</u> 운용 | 계획 | = J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195 | 103 | 125 | 22 | 173 | 60 | 107 | 47 | |

II. 분석 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N어대('011=ㄷ) | 사 | ·업비 집행실 | นเผาเวเ | ш¬ | | |
|-----------------------|---------|---------|---------|------|----|--|
| 사업명('21년도)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사업기간 | 비고 | |
| ЭП | 297,833 | 256,516 | 86 | | | |
|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육성 | 86,760 | 67,739 | 78 | 연간 | | |
| 예치금 등 기타 | 211,073 | 188,777 | 89 | 연간 | | |

○ 잘된 점

- 간소한 상차림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모범음식점에 덜어먹기 실천에 필요한 식기구 지원(공용젓가락 20벌, 공용 나눔 스푼 5벌/ 업소당) 및 적정량 제공, 반찬 가짓수 줄이기, 소형찬기 사용 등 간소한 상차림 권장 지속 추진 독려.
- 지역주민과 외식업소 영업주를 위한 비대면 저염 요리교실 영상 10편을 제작· 공식 채널 등에 게시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효과를 도모하였 으며, 실 영업주와 요리 강사의 현장감 있는 공동 진행으로 흥미 요소를 더함.
- 비대면 QR코드를 통해 신청한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변화 진단을 위한 미각 테스트와 나트륨 섭취 자가진단 등 식습관 파악 설문조사 진행. 이후 3개월간 가정식 등 생활 속 섭취 음식 염도 측정 및 기록지 작성과 비대면 SNS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건강 식단 실천 독려와 영양 정보를 제공.

○ 미흡한 점

-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인 식품위생법 관련 과징금 징수를 통한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예산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기존처럼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 육성에 적절히 기금을 사용하되, 기금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과징금 징수와 보조금 확대 등을 위 해 노력하고자 하며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 시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춘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음식관광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외식업소 및 숨은 맛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구의 외식상권 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u>'20년도</u> | | | <u>'21년도</u> |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68 | 37 | 54 | 87 | 68 | 78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20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68백만원) | - 모범/위생등급지정음식점지원육성(66.2백만원, 84개소) - 나트륨줄이기 사업(18백만원) - 포스터공모전 등 기타음식문화 개선사업(5백만원) | 54% |
| '21년 |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육성 (87백만원) | - 모범등인증음식점관리및지원(18백만원, 73개소) -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13백만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18백만원) - 포스터 공모전 행사 및 포상(4백만원) - 홍보관 등 식품산업 육성(14백만원) | 78%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안심식당, 맞춤형 외식 컨설팅 사업 등을 일반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기금예산 유지하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
|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 중독 관련 홍보 사업 등 | 예산 범위 내 적정 운용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정기 재지정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음식점의 위생화경 개선 기여함.
- 아동에서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고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 개선에 기여함.
- 기금 수입은 일정하지 않으나 예산 범위 내 운용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됨.

- 배달 등록 음식점 대상 등급관련 교육과 평가항목에 따른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위생 마스크, 위생 등급제 길라잡이, 식품보관용기 라벨 지, 옥내 부착 배너 등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배달 형태의 소비가 증 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음식문화 환경 개선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 분 | 지 적 내 용 | 비고 |
|-----------------|-----------------|---------|----|
| 71 77 11 | '19년 | 해당 없음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20년 | 해당 없음 | |
| 717/10 | '21년 | 해당 없음 | |
| 기금운용 (대한 결과 | 성과분석에 (권고조치) | 해당 없음 | |
| 기 | 타 | 해당 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u>'22년</u>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음식문화 개선사업 | 86백만원 | 법률(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규정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 현재의 재정력으로 매년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금의 특성상 일반 회계로 편성 시 탄력적인 운영이 우려됨 | 중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해당 기금 | 음식문화개선 | 87백만원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예치금 등 기타 | 211백만원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_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수입, 시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 주를 이루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부합하게 조성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이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집중되어 있어 기금의 안 정성이 저해되는 면이 있음
- 재원규모: 172,831천원(2021년 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항상을 위하여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
- 현재 기금 수입이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어 일반적인 사업의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의 균형 유지가 필요
-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면 일반회계로 편입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업들은 기존과 같이 기금으로 운용함이 타당함
-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 위주의 기금조성으로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 우므로 보조금 확대 및 추가 재워 마련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 구 분 | <u>'19</u> 년 | <u> </u> | <u>'20</u> Ł | <u> </u> | <u>'21</u> | <u>=</u> |
|-----|-----------------|--------------|----------|--------------|----------|------------|----------|
| | 합 계 | 255,274 | /% | 245,767 | /% | 256,516 | % |
| | 전입금 | _ | _ | _ | _ | | |
| | 보조금 | 36,000 | 14.1 | 36,000 | 14.6 | 49,700 | 19.4 |
| | 차입금 | _ | _ | _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_ | _ | - | _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_ | _ | _ | _ | - | |
| | 예치금회수 | 199,168 | 78 | 184,068 | 74.8 | 198,394 | 77.3 |
| | 예수금 | _ | _ | _ | _ | _ | |
| | 이자수입 | 2,726 | 1.1 | 2,498 | 1.0 | 1,662 | 0.7 |
| | 기타수입 | 17,380 | 6.8 | 23,200 | 9.4 | 6,760 | 2.6 |
| | 합 계 | 255,274 | % | 245,767 | % | 256,516 | % |
| | 비융자성사업비 | 63,954 | 25.1 | 37,293 | 15.1 | 67,739 | 26.4 |
| | 융자성사업비 | _ | _ | - | _ | _ | |
| | 인력운영비 | _ | _ | _ | _ | - | |
| | 기본경비 | _ | _ | _ | _ | _ | |
| 지 출 | 예탁금 | _ | _ | - | _ | _ | |
| | 예치금 | 184,068 | 72.1 | 198,394 | 80.7 | 172,830 | 67.4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_ | _ | - | _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_ | - | _ | _ | _ | |
| | 기타지출 | 7,252 | 2.8 | 10,080 | 4.1 | 15,947 | 6.2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5.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설치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년말 | '21 { | 크도 운용 | 현황 | '21년말 | '22 | 크도 운용 | 계획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27 | 0 | 23 | Δ23 | 4 | 0 | 3 | Δ3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설치 후,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집행되었고 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미흡한 점

- 조례에 규정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등 다양하나 실제 수입원은 간판개선사업 시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국한되어 있어 2021년의 수입은 이자수입이 전부임.

○ 향후 조치계획

-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태료를 수입으로 하는 등의 옥외광고발전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법 검토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 흥을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됨
- 타 기금 및 일반. 특별회계 예산과 중복되지 않으며 간판개선 사업 및 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간판 개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 '20년도 | | | '21년도 | |
|------|-------|----|------|-------|----|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당초계획 | 집행실적 | 비율 |
| _ | _ | _ | 25 | 23 | 92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20년 | - | - | 0 |
| '21년 | ○ 옥외광고물 정비(25백만원) | ○ 옥외광고물 정비(23백만원) | 92%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된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행복알리미 재도색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
| | 옥외광고물 등의 | | 지역특성을 살린 |
| 대구광역시 남구 | 정비를 통한 | ᇬᅜᇎᆁᄸᄭᄜᄱᄭ | 간판개선사업으로 |
| 옥외광고발전기금 | 아름답고 쾌적한 | ∘간판개선시범사업 ∘광고물 정비 |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
| 설치 및 운용조례 | 생활환경 조성 및 | ,워고토 영미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
|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옥외광고물 정비를 원활히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 '19년 | 기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권고 | 정기예금 개설 |
| 각종감사 | | | 2021년도 |
| 지적사항 기적사항 | '20년 | 집행계획 수립으로 기금운용 활성화 필요 | 지출계획 |
| | | | 수립 |
| | '21년 | 해당 없음 | |
| 기금운용 성 | 성과분석에 | 케다 어오 | |
| 대한 결과(권고조치) | | 해당 없음 | |
| J E | 라 | 해당 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22년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 | 정도 |
|--------|----------|----------------------|--------|----|
| | | - 법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 | |
| | |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광고물 정비 | 3백만원 | 의2)에서 규정 | 상 | |
| | | - 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의 | | |
| | |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 없음 | | |
| 타 기금 | 해당 없음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의 성격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등
 - 재원의 규모 : 4,310천원 조성(2021년도 말 현재액)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이자수입 외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및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기금 잔액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 '19년 | | '20년 | | '21년 | |
|-----|-----------------|--------|-------|--------|-------|--------|-------|
| | 합계 | 26,840 | % | 27,033 | % | 27,410 | % |
| | 전입금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26,831 | 99.97 | 26,840 | 99.28 | 27,033 | 98.62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9 | 0.03 | 193 | 0.72 | 377 | 1.38 |
| | 기타수입 | | | | | | |
| | 합계 | 26,840 | % | 27,033 | % | 27,410 | % |
| | 비융자성사업비 | | | | | 23,100 | 84.28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26,840 | 100 | 27,033 | 100 | 4,310 | 15.72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재난관리기금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 설치연도 : 2004. 3. 11. 제정

- 기금성격 : 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u>'20년말</u> | <u>'21년도</u> 운용현황 | | | <u>'21년말</u> | <u>'22</u> Ł | <u> 1도</u> 운용 | 계획 | ¬ |
|--------------|-------------------|-----|------|--------------|--------------|---------------|------|----|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비고 |
| 1,654 | 219 | 353 | 감134 | 1,520 | 257 | 364 | △107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 으로써, 그 재원조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과 불시에 닥치는 재난상황에서 복구 및 재난 심리 지원 등의 예산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성됨.
- 전반적으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사업과 응급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재난관리기금 평가제외 항목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적정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구 분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달성도 |
|-------------|---|---|-------|
| <u>'20년</u>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20백만원) -방재물자 구입(23백만원)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6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용역(310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581.5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301백만원) -제설작업 근무자 방한복 구입 (5백만원) -폭염저감시설 및 재해예·경보시스템 안내표지판 정비(5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369백만원) | 67.9% |
| <u>'21년</u>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10백만원) -방재물자 구입(20백만원)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8.5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382.5백만원) | -폭염대응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 판 정비(17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336백만원) | 83.8%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원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기금 사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하며, 또한 신규 사업은 제한하고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 이 유동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평년 대비 집행실적이 증가함.
- 재난 발생 시 예산 및 추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집 행이 가능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타당성 ⇒ 적정

| 설치근거 | 설치목적 | 주요사업 내용 | 목적 달성 정도 |
|---|-------------------------------------|--|--|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재난의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 -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용역사업 |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장비임차 ,방재시설물 정비 응급복구 목적의 기금 조성으로 주민의 생명, 재산 피해 절감을 구현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 감사 지적사항 등 》

| 구 분 | | 지 적 내 용 | 비고 |
|--------------|-----------------|---------|----|
| | <u>'19년</u> | 해당없음 | |
| 각종감사 지적사항 | <u>'20년</u> | 해당없음 | |
| 717/10 | <u>'21년</u> | 해당없음 | |
| 기금운용 대한 결과 | 성과분석에 (권고조치) | 해당없음 | |
| 기 | 타 | 해당없음 |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사 업 명 | <u>'22년</u> 사업비 | 존치 필요성 | 불가피성 정도 |
|----------------------|-----------------|----------------------------|---------|
|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 | 101백만원 |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함 | 상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 구 분 | 사업명 | 금액 | 비고 |
|-----------------|------|----|----|
| 해당 기금 | 해당없음 | |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당없음 | | |
| 타 기금 | 해당없음 |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 재원의 규모 : 1,520백만원(2021.12.31.기준)

6. 향후 조치계획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늘려 불시에 있을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사업 등 관련 법령의 의도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 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 <u>'19년</u> | | <u>'20년</u> | | <u>'21년</u> | |
|-----|-----------------|-------------|-------|-------------|-------|-------------|-------|
| | 합 계 | 1,883,534 | /% | 2,334,182 | /% | 1,874,071 | % |
| | 전입금 | 187,851 | 9.98 | 197,275 | 8.45 | 210,629 | 11.24 |
| | 보조금 | 21,950 | 1.17 | 291,821 | 12.5 | | |
| | 차입금 | | | | | | |
| 수 입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
| | 예치금회수 | 1,654,199 | 87.82 | 1,827,039 | 78.28 | 1,654,083 | 88.26 |
| | 예수금 | | | | | | |
| | 이자수입 | 19,533 | 1.03 | 18,047 | 0.77 | 9,359 | 0.5 |
| | 기타수입 | | | | | | |
| | 합 계 | 1,883,534 | % | 2,334,182 | % | 1,874,071 | % |
| | 비융자성사업비 | 56,494 | 3.0 | 680,099 | 29.13 | 353,620 | 18.87 |
| | 융자성사업비 | | | | | | |
| | 인력운영비 | |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지 출 | 예탁금 | | | | | | |
| | 예치금 | 1,827,039 | 97.0 | 1,654,083 | 70.87 | 1,520,451 | 81.13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기타지출 |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